

第262回國會  
(定期會)

#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6 號

國會事務處

2006年12月1日(金) 午後 2時

## 議事日程

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著作權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6.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
9.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砂防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1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5. 高齡者雇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測量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4.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28.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2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협정 비준동의안
30.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3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동의안
32.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33.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34.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35.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36.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37.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38.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39.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안
40.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41.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42. 국방개혁기본법안

**附議된案件**

- o 국무위원(국방 김장수) 인사 ..... 4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4
- 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4
-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 · 이용희 · 권선택 · 양승조 · 구노회 · 전병헌 · 나경원 · 노회찬 · 주성영 · 박세환 · 이주영 · 이상경 · 이종걸 · 임종인 · 유재건 · 민병두 · 김진표 의원 발의) ..... 4
-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 · 유인태 · 원혜영 · 김동철 · 박기춘 · 염동연 · 이광철 · 조성래 · 지병문 · 김선미 의원 발의) ..... 5
- 4.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5
- 5. 著作權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 7
- 6.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7
- 7.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7
- 8.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 9.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 10. 砂防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 1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 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신중식 · 조일현 · 강창일 · 김재윤 · 이시중 · 김광원 · 지병문 · 김명주 · 류근찬 · 강기정 · 김낙성 의원 발의) ..... 8
- 13.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 10
-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주호영 · 임해규 · 김영덕 · 김충환 · 정희수 · 안홍준 · 유기준 · 정진섭 · 허천 · 김정권 · 김석준 · 서상기 · 이주호 · 권경석 · 진수희 · 박계동 · 이낙연 · 이해봉 · 엄호성 · 안상수 · 배일도 · 박재완 · 김재원 · 정두언 · 공성진 · 박세환 · 우원식 · 단병호 · 강기정 · 이재창 · 고조홍 · 김형주 · 최성 · 서재관 의원 발의) ..... 10
- 15. 高齡者雇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0
- 1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0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12
18. 測量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12
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12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12
21.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이호웅·문학진·박상돈·신학용·우원식·우제항·이기우·강혜숙·조경태·장영달·정봉주·한광원 의원 발의) .....	12
22.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14
23.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14
24.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14
2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26.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5
27.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	16
28.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	16
2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협정 비준동의안 .....	16
30.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	16
3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동의안 .....	16
32.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	16
33.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8
34.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8
35.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8
36.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	18
37.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19
38.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19
39.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안 .....	20
40.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20
41.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20
42. 국방개혁기본법안(정부 제출) .....	21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3
○ 5분자유발언 .....	24

(14시19분 개의)

○의장 임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기노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새로 임명되신 국무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국무위원(국방 김장수) 인사

(14시21분)

○의장 임채정 김장수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장수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여야 당 대표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

신임 김장수 국방부장관입니다. 어려운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금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준엄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국방은 변화하는 안보환경하에서 현존 위협과 미래 위협에 동시 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떠한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국민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국방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정예 강군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과 국방에 대한 국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23분)

○의장 임채정 다음은 의사일정의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1항~제7항, 제9항~제25항은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지만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법 제9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선병렬·이용희·권선택·양승조·구노희·전병

현·나경원·노회찬·주성영·박세환·이주영·이상경·이종걸·임종인·유재건·민병두·김진표 의원 발의)

(14시24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상경 의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이상경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울 강동을 출신 이상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선병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및 문병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 내부 또는 외부의 경쟁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맞춰 감사원에도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셋째, 감사위원의 요건 중 현재 “1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거나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5년 11월 23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부칙 제2항에 2007년 2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7년 1월 31일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이 개청되더라도 종전 대전지방법원에 계속된 가사사건 등은 그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남아 있게 되고 계속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대전지방법원의 가사재판부를 당분간 존치시킬 수밖에 없으며,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경우 새로 접수되는 사건 외에는 별다른 사건이 없어 수개월 동안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부칙 제2항을 2007년 2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7년 1월 31일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그러면 먼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 발의)(양형일·유인태·원혜영·김동철·박기춘·염동연·이광철·조성래·지병문·김선미 의원 발의)

4.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4시31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양형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양형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광주 동구 출신 양형일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비과세 제도는 담세력 있는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역진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 등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수령한 보상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역의 범

위를 일정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보상금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고 비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역의 범위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수용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와 연결한 시·군·구 및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결 시·도로 하되 농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으로 하며, 자경 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김한길 의원, 이계경 의원, 이인기 의원, 이혜훈 의원, 윤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직자 재산등록의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 시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되 장기 보유로 실거래가액이 공시가액보다 낮게 될 경우에는 현재의 공시가액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해 등록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게 하고 이 경우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거짓 소명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등의 제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피부양자가 아닌 자의 고지거부 제도는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용하되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 재산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등록 의무자 등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영리 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영리 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그러면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201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9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0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著作權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제출)

(14시40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5항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이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이상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정성호 의원, 윤원호 의원, 이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방송과 전송 등 모든 유형의 송신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최상위 개념인 공중송신권을 신설하고 방송과 전송이 융합된 웹캐스팅을 포함하는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의 이용, 수업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전송,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전제에 관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디지털저작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분쟁조정 중심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개편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수거 및 폐기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불법복제물이 인터넷상에서 복제 또는 전송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최근 저작권이 산업화되면서 침해행위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이와 같은 침해행위는 그 위법성이 현저하고 저작물 이용질서와 산업질서를 매우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리를 위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는 다른 침해행위와 달리 비친고죄로 규정하여 신속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著作權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관광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정** 그러면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4인 중 찬성 206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7.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9.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砂防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신중식 · 조일현 · 강창일 · 김재운 · 이시종 · 김광원 · 지병문 · 김명주 · 류근찬 · 강기정 · 김낙성 의원 발의)

(14시44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6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이영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정종복 의원 대표발의, 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3건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심의회의 직무사항에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이계경 의원 대표발의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서, 양곡 소유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의 요건을 양곡의 수급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농어촌특별세 사업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되 다만 농어촌특별세로 국민연금관리

공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DDA와 FTA에 대한 농업분야 재원 마련이라는 농어촌특별세의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제5조제2항제2호가목의 ‘농림어업인 연금제운영 지원사업’을 ‘농림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는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중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아니하여 대의원회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자조금별 대의원회 운영규정에서도 이러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문화된 수익자 부담에 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수용하되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유 및 사방지의 지정해제 사유에 대하여는 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이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과 징계의 절차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림 등의 매수업무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수용하되 수탁기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해양수산위원장)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砂防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이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농  
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양  
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농어촌구조개  
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축  
산물의 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  
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219인, 기권 1인으로서 사  
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청원산림보호  
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국  
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14시57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서갑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서갑원 산업자원위원회 서갑원 의원입니다.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윤두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공회의소 회원 중 당연회원의 가입 기준을 특별시에 소재하는 자는 10억 원 이상으로, 광역시에 소재하는 자는 4억 원 이상으로, 시·군에 소재하는 자는 2억 원 이상으로 하되 당연회원 관련 규정의 적용 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고,

둘째, 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하여 종전에는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 1차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넷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그 사업 수행 및 공직 선거에 있어서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서갑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197인, 반대 4인, 기권 5인으로서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주호영·임해규·김영덕·김충환·정희수·안홍준·유기준·정진섭·허천·김정권·김석준·서상기·이주호·권경석·진수희·박계동·이낙연·이해봉·엄호성·안상수·배일도·박재완·김재원·정두연·공성진·박세환·우원식·단병호·강기정·이재창·고조홍·김형주·최성·서재관 의원 발의)**

**15. 高齡者雇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5시01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신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신상진 환경노동위원회 신상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 규칙의 게시와 관련하여 게시 장소가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인력의 활용 증진을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한 고령자의 직업지도, 취업 알선 등을 위해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자의 고용을 일정 연령 이상까지 보장하거나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 체계 개편 및 직무 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고용 현황,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및 정년제도 운영 현황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직업훈련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건축법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적용근거가 시행령에서 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고, 지정직업훈련시설 제28조의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부칙 경과조치에서 2006년 6월 30일까지 적법한 건물 용도에 맞는 시설요건 등을 갖추도록 유예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훈련시설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훈련시설 지정의 탈락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훈련 차질이 우려되어 유예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 高齡者雇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신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8인 중 찬성 201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18. 測量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21.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이호웅·문학진·박상돈·신학용·우원식·우제항·이기우·강혜숙·조경태·장영달·정봉주·한광원 의원 발의)  
(15시08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박상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개업자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간

판에 표기하도록 하였고,

둘째,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하고, 실거래 신고기한을 계약 체결일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셋째, 실거래 신고담당 공무원은 실거래 신고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의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측량업자는 측량 기술자의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기능사에 대한 근무처·경력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와 완료한 때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도록 하였고,

셋째, 세계 측지계 부분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와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측량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3년간 연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지정·변경 시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둘째, 사업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그 결과를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둘째, 공원관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1월 1일 현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

획이 고시된 경우 자연공원 안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에 관해서는 해당 공원계획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국토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測量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박상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10

인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7인, 기권 26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3인 중 찬성 196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5인 중 찬성 194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3.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4.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21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박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박승환**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부산 금정구 출신의 박승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항공기 사고의 구호 및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둘째, 국가의 관문인 공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행위 등 공항시설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지수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이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교통안전정책이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둘째, 교통안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점검 및 교통안전 진단 제도를 재정비하였으며,

셋째,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도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 정보관리 체계의 구축 운용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교통안전 관리자의 결격사유 중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부분은 삭제하고 교통안전 체험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의료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재활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의 관리·운영 방식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도로 손괴자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기준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이용희** 박승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201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5시30분)

**○부의장 이용희** 의사일정 제26항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홍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홍미영** 여성가족위원회 홍미영입니다.

지금부터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영선 의원님과 이계안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제목의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미혼모 출산이 연간 1만 3000여 건에 달하는 등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미혼모 아동들의 70% 이상이 해외에 입양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혼모뿐만 아니라 그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사람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하였고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부자가정에 제공해야 되는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기존의 미혼모 시설을 미혼모자 시설로 변경하여서 미혼여성의 임신·출산뿐 아니라 출산 후에도 아동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모·부자 복지시설에 미혼모자의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의 공동생활가정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홍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201인, 기권 3인으로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28.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2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

**별행정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협정 비준동의안**

**30.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동의안**

**3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동의안**

**32.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15시35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고흥길 의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고흥길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출신 고흥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6년 11월 29일 제262회 국회 제1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협정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비준동의안은 해외도피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외도피사범의 처벌을 통해 범죄인에 대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제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증



가하는 범죄인의 해외도피 의도를 차단하며 양국 간 범죄행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공조 체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비준동의안은 범죄의 수사·기소·재판에 필요한 증인이나 증거물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양국이 협력을 통해 국제 형사 공조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제적인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진압하는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간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의교통상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이용희 고흥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6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34.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35.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36.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15시47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최성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최성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성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헌법 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2006년 11월 29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 국민 및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체류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게 되어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이중납부의 부담을 해소하여 어느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만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보험의 이중가입을 배제하여 과건근로자에 대해 상대국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상대국 진출 및 상대국 기업의 국내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양국 간의 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마도 17대 국회의 법률안 및 비준안 중에서 가장 긴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읽어보면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주기술보호협정이 우주분야 전반의 한·러 협력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술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 의정서는 우주발사시스템에 국한된 기술보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주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 없이 국제적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한·러 간 우주개발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

도록 하고 우주분야에서의 양국기업 간 협력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개발 및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38.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39.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안**

**40.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41.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15시57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이화영**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6년 11월 29일 제262회 국회 제1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

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5건의 비준동의안은 우리 국민 및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때 우리나라와 소득원천지국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공히 과세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소득별로 양국 간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세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과세상 양국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양국 간 조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절차를 돕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협정 당사국 간 인력·자본의 이동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여 투자 진출 등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이용희** 이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법 처리와 관련하여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잠시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회)

○**부의장 이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기본법안을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오늘 의사일정 제42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42. 국방개혁기본법안(정부 제출)

○**부의장 이용희** 의사일정 제42항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안영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안영근** 먼저 늦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안영근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군의 합동성을 강화시키면서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선 발전시키는 한편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정예강군을 육성해야 하는 국방개혁은 국가 차원의 필수적 과제라고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국방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으며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덟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이 법에 따라 목표연도 2020년까지 우리 군을 개혁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제명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국방개혁이 지향해야 할 선진 정예강군의 육성 의지를 보다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보완하였으며,

둘째,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안보정세와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계획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개혁 과정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의 개편에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하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 평가, 남북 간의 군사 신뢰구축 및 평화 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한 구체적 목표수준을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병력 감축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예비병력은 구체적 수치를 명기하는 대신 상비병력과 연동하여 개편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한 이후에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토론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반대토론에 껴넘하지 마시고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방개혁기본법안 심사보고서

(국방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안영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나와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되 여러 의원님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원래 15분간 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5분 이내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밤이 늦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야 의원 분들께 국방개혁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나왔습니다.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2007년도 238조 5000억인데 이 중에 국방 예산이 24조 6000억입니다.

지금 국방부는 정부 예산을 들어서 2020년까지 621조를 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평균 예산 증가율이 6.4%인데 두 가지 예산만이 내년 예산에 증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복지 예산이요, 두 번째로 국방 예산입니다. 국방 예산은 9.7%가 증가했고 복지 예산은 11.4% 증가했습니다.

국방 예산이 증가를 하면 어떤 데 써야 되는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법이 국방개혁법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빠져

버린, 이 법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방부에서 만든 원안보다 너무나 후퇴한 것이 국방위에서 결정된 이 법안입니다. 제가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방개혁법안의 4조를 보면 (국가의 기본 의무) 해서 “국가는 국방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것 법사위에서 오늘 “정부”로 바꿨습니다마는,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하여 최적화 수준을 유지하도록 충원·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느 부에서, 국가가 그 예산을 확실하게 보장하라는 법을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지 예산이 그렇습니까? 무슨 환경 예산이 그렇습니까? 관광 예산이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는 그래서 이 법안은 국방개혁법안이 아니라 국방예산 안정적 확보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면 구조 개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13조에 보면 국방부 원안은 국방부 소속 군무원을 문민으로 해서 70%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후퇴해서 “연차적으로 문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국방부에 대한, 국방부나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부 원안에는 인사청문제도를 합참의장,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을 국회 인사청문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은 합동참모회의의장만 인사청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서 권한을 확대해야지 왜 이렇게 좁히게 됐느냐……

그다음에 19조, 유급지원병제가 있습니다. 유급지원병이라는 것은 군대 마치고 난 뒤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병들에 대해서 돈을 좀 더 줘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후퇴했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원안에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위 수정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비군이 지금 3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쓸데없는 교육을 많이 시켜서 생업에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국방부 안에서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50만 명으로 한다.” 그런데 이 국방위 안에서는 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무기·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를……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킨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장병에 대한 대우가 좋아져서 장병기본권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국방개혁법안이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후퇴된 데는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병석 의원 의석에서 -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국방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병석 의원 의석에서 - 열린우리당을 지금 도와주는 것인데……)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마땅히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들어가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용희 됐다, 됐어요. 참으셔, 참아.

자, 우리 임종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20인, 반대 17인, 기권 15인으로서 국방개혁기본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8시40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18시43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장수 국방부장관, 김영룡 차관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박찬숙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박찬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택으로 가지거나 또는 식사하러 가지면서 오늘 저녁 9시 뉴스에는 어떤 것이 톱뉴스일까를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론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사회의 방향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끼는 공영방송, 국가의 기간방송 KBS의 사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가의 기간방송, 이 수장 정연주 사장은 KBS에 출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정당당하게 사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일했던 그 직장에 그 사람은 모두가 나오는 출구로 도둑처럼 슬며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조가 강력히 저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KBS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임명 과정, 추천 절차도 하자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KBS 사장은 노조와 함께 KBS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4명, 그리고 외부에 3명 해서 7명의 사추위가 구성됐는데 한 사람이 그만뒀습니다.

이어서 노조 측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그 빈자리에 다른 사장추천위원을 추천했지만 이사회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KBS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13명의 후보가 응모했습니다. 스물일곱 살짜리, 스물여덟 살짜리도 있었습니다. 어떤 후보는 자신의 경영 철학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3명 중에 8명만이, 8명은 한 표를 얻는 데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면접 절차가 이루어졌는가? 다른 후보들은 그나마 자신의 발로 들어가서 면접을 마쳤는데 단 한 사람, 3년 반 동안 KBS에서 좌파 이데올로기를 전파했던 정연주 사장은 경찰의 엄중한 호위 속에 면접장에 들어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KBS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을, 그 사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사들이 반대한다든가 면접을 볼 필요가 있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3년 반의 성적표는 이미 나와 있고 KBS 사원노조 82.2%가 반대하는 가운데 정연주 사장은 면접을 보러 가는데, 바로 일했던 그 직장에 연임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경찰의 삼엄한 호위 속에, 경호 속에 들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기간방송의 사장이 하여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인가?

3년 반 동안 정연주 사장은 2003년 4월에 KBS 사장으로 오자마자 ‘한국사회를 말한다’라는 다큐 프로를 2편을 제작했습니다. 북한노동당 권력서열 23위 송두율 교수라는 사람을 ‘경계인’이라는 이름으로 애매모호하게 우리 사회에 좌파 이데올로기를 전파시키는 바로 그 주인공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출연시키는 데 KBS의 이사장이었던 이종수 씨가 독일까지 건너가서 섭외하는 가운데 이런 프로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단단한 안보의식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4년 8월에는 어떤 프로에서 북한의 혁명가 ‘적기가’가 40초간이나 흘러나오도록 한 것이 바로 정연주 씨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KBS 라디오에서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김명철이라는 사람이 “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수소폭탄도 실험할 수 있다.” ‘우리’라는 말을 막 씌워서 처음부터 듣지 않은 사람은 생방송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라니, 대한민국이란 말인가라는 착각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정연주 씨의 KBS였



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은 잘 했는가? KBS 역사상, 제 68년부터 KBS 공채 2기로 들어갔는데 73년에 공영방송이 된 이래 11명의 사장을 맞고 보냈습니다만, 적자는 없었습니다.

2004년 638억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5년에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 하면 만약에 2005년에 적자 경영이 된다면 우리 임원진은 모두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등포세무서와 함께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2000억 원에 관한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6억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한 가운데 그것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적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흑자이기 때문에 그만둘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눌러 앉았습니다.

이것만이면 또 할 말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20% 받지 않은 돈을 임원진이 다시 몽땅 받아 낸 이러한 부도덕성한 사람이 KBS 정연주 사장인 것입니다.

적자 경영 그리고 사회 이데올로기를 이상하게 무너뜨린 북한을 찬양하는 일변도의 방송, 우리 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게 한 정연주 KBS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KBS에서는 노조위원장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세 팀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정연주 사장을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하는가, 이 사람이 왜 안 되는가 하는 선명성 경쟁의 노조위원장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7일 결선투표가 있다고 합니다.

역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는 사원의 복지, 공명정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KBS를 올바르게 끌고 갈 것인가를 노조위원장 후보들이 자신의 식견을 말하는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은 그들이 함께 일해야 될 정연주 사장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선명성 논쟁으로 KBS 노조위원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왜 안 되는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인식하고 취소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도덕성으로 지적받고

있는 정연주 사장이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나머지 1년 동안에 참여정부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박찬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7차 본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9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정 복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열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문 헌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주 성 영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박 상 돈    이 해 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6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원 기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한 길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해 영    유 기 준  
 유기 흥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정 복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열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문 헌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주 성 영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차 명 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1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주호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최한광	최원자
한화갑	허천	현애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	황우여

**반대 의원(3인)**

김영선 박세환 차명진

**기권 의원(2인)**

이종구 진수희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89인)**

강길부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근식
이낙연	이목희	이상경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해봉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영달	전재희	장향숙	전여옥
정병국	정종복	정성호	정성
정형근	조성태	조순형	정
주승용	천정배	최경환	정
최성	최재성	최순영	정
최원자	최한광	최재천	정
홍미영	홍현애	홍준표	정
황우여	황창	홍준표	정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한화갑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0인)**

고조홍 김기춘 박세환 서병수  
 송영선 이명규 이재창 임인배  
 정갑윤 정병국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해봉 이해찬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조성래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한화갑 허천선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7인)**

김영선 노회찬 송영선 진영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기권 의원(1인)**

고홍길

**○著作権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6인)**

강기정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4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광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재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근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한화갑 허천현애자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고경화 이강래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5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태년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광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재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근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민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성권 이성구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재우 이주영 임인배 임화영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임해규  
 장경수 장갑윤 장복심 장영달  
 정성호 정진석 정종복 정갑윤  
 정성호 정진석 제종길 정갑윤  
 주성영 주승용 주영진 주영달  
 진영 최경환 최연희 최연희  
 최연희 한광원 한광원  
 현애자 황우여 황우여

정 덕 구	정 문 헌	정 병 국	정 성 호	우 제 창	원 혜 영	원 희 룡	유 기 준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유 기 홍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인 태
정 진 섭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조 성 래	조 성 태	주 성 영	주 승 용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속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균 현
차 명 진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호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한 화 갑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허 천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웅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b>기권 의원(1인)</b>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이 용 희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여 옥
				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문 헌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홍 길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기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홍 길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기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맹문희	강창일	강해숙	고경화	고조홍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염동연	오영식	우원식	우윤근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홍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김희정	나경원	남정필	노영민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이계진	이광재	이근식	이낙연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박영선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박형준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변재일	서갑원	배기선	배일도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서재관	서혜석	서병수	서상기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전재희	정갑윤	정문현	정병국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이계진	이광재	이근현	이근식
천정배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한선교	한화갑	허천	현애자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황우여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현	정병국	정성호

기권 의원(2인)

안홍준 오제세

○砂防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9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한화갑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최연희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8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세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한화갑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틀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4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현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한화갑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김종인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7인)**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윤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진여옥
전재희	정덕구	정문현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한화갑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4인)**

김정훈 유승민 차명진 최경환

**기권 의원(5인)**

김재홍 김정권 이한구 정갑윤  
 진수희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진여옥 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한화갑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김무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6인)**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해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高齡者雇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1인)**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재경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훈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김나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경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유승희	유인태	유필우	윤건영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종근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한구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명옥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몽준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유승희	유인태	유필우	윤건영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조성태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진수희	진영	천정배	최경환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한선교	한화갑	허천	홍미영	이영호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황진하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b>반대 의원(5인)</b>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노회찬	심상정	천영세	최순영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현애자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b>기권 의원(2인)</b>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이용희	차명진			정덕구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8인)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한화갑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강성종 김현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해찬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지병문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송자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용희

**반대 의원(1인)**

김영선

**기권 의원(10인)**

김성조	김애실	신상진	심재철
유기준	이규택	이한구	임종인
진수희	차명진		

○測量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8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근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한구 이해찬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박세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6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홍길 광성문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남경필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안경률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근식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상열 이은영  
 이성권 이시종 이용희 이재창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해찬  
 이종걸 이주영 이주호 임종인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덕구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지병문 진영세 최성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최철국  
 최연희 최용규 최재천 최미영  
 한광원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7인)**

김정훈 맹형규 박성범 박찬숙  
 배일도 심재철 안상수 이계경  
 이성구 이윤성 이재웅 임태희  
 정진섭 차명진 최경환 한선교  
 홍준표

**기권 의원(25인)**

고조홍 고진화 권경석 김애실  
 김용갑 김정권 김태환 김희정

문희 박세환 안명옥 안홍준  
 원희룡 유승민 이계진 이명규  
 이상배 이원복 이종구 이한구  
 장윤석 정갑윤 정병국 정희수  
 진수희  
 (박병석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찬성 의원  
 160인, 기권 의원 25인임)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임혜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세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5인)**  
 강기갑 노회찬 심상정 천영세  
 현애자  
**기권 의원(2인)**  
 이원복 이한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96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용희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19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송자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서해석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김영주	김용갑	김재윤	김재홍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윤근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필우	남경필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이미경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용희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화영	서재관	서해석	손봉숙	송영길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임해규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정덕구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정성호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지병문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이미경	이병석	이상배	이상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원복
황우여	황진하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반대 의원(2인)**

정의화 차명진

**기권 의원(9인)**

김성조	김애실	박찬숙	심재철
이원복	이한구	임종인	주승용
진수희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4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김영주	김용갑	김재윤	김재홍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해석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진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이 용 희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인 태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균 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종 길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태 회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정 희 수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류 근 찬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우 원 식	우 윤 근	유 기 준	우 제 창
원 희 룡	유 인 태	윤 호 중	유 기 흥
유 승 회	윤 원 호	윤 호 중	윤 건 영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강 두
이 근 식	이 낙 연	이 상 경	이 계 진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성 권	이 명 규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윤 성	이 상 배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재 오	이 영 호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종 구	이 은 영
이 종 길	이 종 구	이 해 봉	이 재 웅
이 한 구	이 해 봉	임 해 규	이 주 영
임 태 회	임 해 규		이 화 영



우 제 향	원 회 룡	유 기 준	유 기 흥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윤 건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이 균 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배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이 상 열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영 호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이 주 호	이 한 구	이 화 영	임 인 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임 종 인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원 회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유 승 회	유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균 현	이 근 식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병 석
조 성 래	조 성 태	주 승 용	주 호 영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구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이 성 권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복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규 식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재 성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한 구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기권 의원(1인)**

김 영 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류 근 찬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회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승 회	유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균 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태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김 애 실 문 병 호 유 인 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권 경 석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광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윤건영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최성천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선교 허천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안홍준 이근현 한광원  
 (홍미영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투표 의원  
 205인, 찬성 의원 202인임)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200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선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근식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규식 최병국 최성천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신상진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이영호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임종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유인태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계경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현	이계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이미경	이병석	이상배	이성구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이성권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정형근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이주영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이화영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정문현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로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

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4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기권 의원(1인)

우제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

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200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권선택	권영길	권철현	김교홍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문석호	문학진	문희춘	문희상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김부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김형오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노회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이계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서혜석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이미경	이병석	이상배	이석현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용희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오제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한구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태희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이계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이미경	이병석	이상배	이석현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용희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이주영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이화영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

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정장선	정청래	조성래	진수희	천정배	최연희	최철국
정종복	정형근	조성태	진영	최규식	최용규	한광원
정진석	정희수	주승용	차명진	최병국	최재성	한선교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이 재 오

이 화 영 임 인 배 임 태 희 임 해 구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김 진 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택 권 영 길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종 룡 김 종 인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류 근 찬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중 근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회 유 인 태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중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한 구 이 해 봉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택 권 영 길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종 룡 김 종 인 김 춘 진  
 김 학 송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류 근 찬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기 춘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상 돈  
 박 중 근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근식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이용희 정진석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  
 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4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임해규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철현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희춘 박명광 박병석  
 박계동 박기춘 박승환 박영선  
 박상돈 박성범 박찬숙 박찬숙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근식 이낙연  
 이계경 이계진 이병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진여옥 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성천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준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7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성진 권선택 권영길  
 권철현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용갑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학송  
 김태년 김태환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룡  
 문희상 박병석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종근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심재덕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길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윤원호 이계경 이명규 이미경  
 이석현 이성권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이경숙 이계진 이명규 이미경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진여옥 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성천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준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권경석 김영숙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  
 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  
 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2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철현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재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재홍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의 소  
 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2인)**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철현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재윤 김재홍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양형일 안엄호성 안오영식 안오제세 류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유승희 유인태 유필우 윤건영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길  
 이근식 이명규 이상배 이석현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재오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이한구 이화영 임인배 임태희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유승희 유인태 유필우 윤건영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병석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성권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지병문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이재오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천정배 최규식 최성 최재천 최철국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한광원 한선교 허천 현애자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황우여 황진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이 용 희 정진섭 정청래 진수희  
 천정배 최용규 한광원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이 용 희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90인)**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철현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윤 김재홍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명옥  
 안명옥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병석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성권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박영선 의원석 버튼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190인, 기권 의원 없음)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소  
 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  
 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1인)**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윤호중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0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철현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윤 김재홍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재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성래 조성태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김학송 홍창선

**○국방개혁기본법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20인)**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흥길  
 권철현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명주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송자 김영주 김종률  
 김춘진 김태환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영근 양승조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광 재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은 영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종 걸 이 주 영 이 화 영  
 임 종 석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전 재 희 정 덕 구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주 성 영 진 수 희  
 차 명 진 채 수 찬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허 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진 하

**반대 의원(17인)**

강 기 갑 권 영 길 김 병 호 김 재 윤  
 김 태 홍 배 일 도 안 민 석 이 석 현  
 이 성 권 임 종 인 임 해 규 정 문 현  
 정 청 래 지 병 문 천 영 세 한 선 교  
 현 애 자

**기권 의원(15인)**

강 기 정 김 애 실 김 영 선 김 태 년  
 김 형 오 김 형 주 노 영 민 박 찬 석  
 박 찬 숙 이 계 진 이 목 희 이 상 민  
 이 인 영 이 종 구 천 정 배

**○출석 의원(260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기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상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박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오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회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재 창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해 찬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회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일 현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재 천 최 용 규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화 갑 한 광 원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출장 의원(8인)

심재엽 이원영 이혜훈 전병헌  
정의용 조배숙 조정식 최구식

○청가 의원(19인)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덕규  
김명자 김우남 김원웅 김재원  
김충환 유시민 이경재 이방호  
이상득 이진구 정동채 정두언  
정세균 채일병 한명숙

○출석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김장수  
농림부장관 박홍수

○출석 정부위원

국방부차관 김영룡  
행정자치부제2차관 장인태  
문화관광부차관 박양우  
노동부차관 김성중  
여성가족부차관 김창순  
건설교통부차관 이춘희  
외교통상기획관리실장 김수동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태량  
입법차장 민동기

【보고사항】

○의안 제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6. 11. 30 이인기·김석준·김재경·서병수·김영덕·김정훈·이해봉·유승민·서상기·정갑윤·김성조·권경석·곽성문 의원 발의)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6. 11. 30 안상수·신상진·이계경·이인기·박찬숙·정성호·이해봉·곽성문·김애실·박상돈·김선미·정봉주 의원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6. 11. 30 김교홍·이윤성·김부겸·이명규·주성영·이해봉·김석균·이경재·한광원·이인제·신학용·황우여·박진·김영숙·유기준·정갑윤·최경환·이종구·최구식·이상배·김양숙·이주영·김광원·유정

복·김애실·권영세·김희정·정두언·이계경·서상기·박순자·원희룡·이재오·홍준표·임태희·유필우·송영길·안영근·홍미영·문병호 의원 발의)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環境管理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6. 11. 30 한선교·김정훈·유승민·이성권·최경환·엄호성·김양수·이명규·박형준·조성래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6. 11. 30 한선교·이성권·최경환·김정훈·김양수·이명규·김기현·박형준·조성래·최성 의원 발의)

**環境改善費用負擔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6. 11. 30 한선교·이성권·최경환·권철현·김정훈·엄호성·김양수·이명규·박형준·조성래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6. 11. 30 한선교·이성권·최경환·권철현·김정훈·엄호성·김양수·이명규·박형준·조성래 의원 발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6. 11. 30 한선교·김정훈·유승민·이성권·최경환·엄호성·김양수·이명규·박형준·조성래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6. 11. 30 한선교·김정훈·유승민·이성권·최경환·권철현·김양수·이명규·박형준·조성래 의원 발의)

이상 6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6. 11. 30 한선교·김정훈·유승민·이성권·최경환·권철현·김양수·이명규·박형준·조성래 의원 발의)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 12. 1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 12. 1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 12. 1 산업자원위원장 제출)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 12. 1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著作權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06. 12. 1 문화관광위원장 제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6. 12. 1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測量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른안(대안)**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 2006. 12. 1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高齡者雇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6. 12. 1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휴회의 건**  
 (2006. 12. 1 의장 제의)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5일간)

○의안 심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06. 11. 8 이주영·박세환·나경원·최병  
 국·임종인·선병렬·김동철·이상경·주성  
 영·조순형·이종걸·이상민·안상수·안홍  
 준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5. 9. 15 김동철·노현송·양형일·김태  
 흥·구노희·조경태·최인기·지병문·염동  
 연·강기정 의원 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6. 4. 12 문병호·박기춘·김태홍·신학  
 용·정성호·장향숙·강기정·김동철·이근  
 식·김춘진·안병엽·이영호·서재관·유필

우·제종길·조성래·이기우·장복심 의원 발  
 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4. 11 정부 제출)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  
 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이상 2건 2005. 11. 21 정부 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  
 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006. 2. 17 정부 제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  
 준동의안**  
 (2006. 3. 27 정부 제출)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  
 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  
 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의 소  
 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공화국 정부 간의 소  
 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6건 2006. 8. 16 정부 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  
 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  
 정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조약협정 비준  
 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  
 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3건 2006. 8. 17 정부 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  
 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

**약 비준동의안**

(2006. 10. 23 정부 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2006. 11. 14 정부 제출)

(이상 15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15건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장수) 인사청문 요청안**

(2006. 11. 8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1월 23일 대통령에게 송부

**국방개혁기본법안**

(2005. 12. 2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국방위원장 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

(2006. 4. 20 양형일·유인태·원혜영·김동철·박기춘·염동연·이광철·조성래·지병문·김선미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公職者倫理法 一部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5. 3. 29 이인기·고홍길·박찬숙·유기준·이명규·김문수·윤건영·임인배·권오을·곽성문·주성영·최경환 의원 발의)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5. 6. 17 이계경·김재경·엄호성·임태희·이성권·김석준·안상수·정병국·권오을·정종복·남경필·진수희·홍미영 의원 발의)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김한길·강기갑·강기정·강길부·강봉균·강성중·강창일·강혜숙·고진화·구논회·권선택·권영길·권오을·김교홍·김근태·김낙성·김낙순·김덕규·김동철·김명자·김부겸·김선미·김성곤·김영주·김영춘·김우남·김원웅·김재윤·김재

홍·김종률·김종인·김진표·김춘진·김충환·김태년·김태홍·김혁규·김현미·김형주·김효석·김희선·김희정·남경필·노영민·노웅래·노현송·노희찬·단병호·류근찬·문병호·문석호·문학진·문희상·민병두·박계동·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영선·박찬석·배기선·배일도·백원우·변재일·서갑원·서재관·서혜석·선병렬·송영길·신계륜·신국환·신기남·신상진·신중식·신학용·심상정·심재덕·안명옥·안민석·안병엽·안영근·안홍준·양승조·양형일·염동연·오영식·오제세·우상호·우원식·우윤근·우제창·우제항·원혜영·원희룡·유기홍·유선호·유승희·유시민·유인태·유재건·유필우·윤원호·윤호중·이강래·이경숙·이계경·이계안·이계진·이광재·이광철·이근식·이기우·이낙연·이목희·이미경·이상경·이상민·이상열·이석현·이승희·이시종·이영순·이영호·이용희·이원영·이윤성·이은영·이인영·이재오·이종걸·이종구·이혜봉·이호웅·이화영·임종석·임종인·임채정·장경수·장복심·장영달·장향숙·전병헌·정갑윤·정덕구·정동채·정두언·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봉주·정성호·정세균·정의용·정장선·정진석·정청래·제종길·조경태·조배숙·조성래·조성태·조일현·조정식·주승용·지병문·채수찬·천영세·천정배·최성·최규성·최규식·최순영·최용규·최재성·최재천·최철국·한광원·한명숙·한병도·한화갑·현애자·홍미영·홍재형·홍준표·홍창선 의원 발의)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2. 8 정부 제출)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06. 3. 7 이혜훈·김무성·김정부·박재완·엄호성·유승민·이한구·최경환·우제창·김석준·이진구·최구식 의원 발의)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006. 3. 31 윤건영·박재완·유기준·이계경·김재원·심재철·김애실·정병국·강기정·이주호 의원 발의)

(이상 6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著作權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4. 9. 4 정성호 · 이철우 · 이원영 · 강혜숙 · 노현송 · 최용규 · 천정배 · 김동철 · 김기석 · 우윤근 · 한명숙 · 노영민 · 문희상 의원 발의)

**著作權法中改正法律案**(윤원호 의원 대표발의)

(2004. 12. 27 윤원호 · 이계진 · 이광철 · 조성래 · 김재운 · 정청래 · 최철국 · 김영주 · 안민석 · 신학용 · 최규식 · 문학진 · 최재성 · 복기왕 · 서재관 · 양형일 · 장복심 · 홍미영 · 이석현 · 고진화 · 민병두 의원 발의)

**著作權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2005. 6. 13 이광철 · 정청래 · 윤원호 · 노웅래 · 이계진 · 임종인 · 최규성 · 한병도 · 김재홍 · 장영달 · 김태년 · 이경숙 · 민병두 · 이화영 · 김태홍 · 이미경 · 강창일 · 노현송 · 우상호 · 조배숙 · 강혜숙 · 유기홍 · 최인기 · 구논회 · 최철국 · 조성래 · 조정태 · 장향숙 · 홍창선 · 김명자 · 안민석 의원 발의)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0. 31 우상호 · 김재운 · 백원우 · 이경숙 · 강혜숙 · 김재홍 · 최재성 · 정성호 · 김영주 · 이인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06. 8. 16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06. 4. 3 김우남 · 신중식 · 조일현 · 강창일 · 김재운 · 이시종 · 김광원 · 지병문 · 김명주 · 류근찬 · 강기정 · 김낙성 의원 발의)

**砂防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3. 24 정부 제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3. 3 정부 제출)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 12 정부 제출)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04. 10. 1 강기갑 · 박승환 · 김원웅 · 서갑원 · 이은영 · 현애자 · 이영순 · 노회찬 · 심상정 · 천영세 · 단병호 · 이시종 · 권영길 · 조승수 · 최순영 · 김영덕 의원 외 1인 발의)

(폐기하기로 의결)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05. 7. 21 김재원 · 김영덕 · 김양수 · 김재경 · 김명주 · 김종률 · 박승환 · 유승민 · 이방호 · 이시종 · 이진구 · 주호영 · 홍문표 의원 발의)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6. 5. 22 이계경 · 김효석 · 박상돈 · 임태희 · 김정훈 · 박찬숙 · 엄호성 · 주성영 · 김석준 · 이성권 · 정화원 · 안명옥 · 김태환 · 황우여 의원 발의)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06. 6. 30 강기갑 · 고조홍 · 강기정 · 권영길 · 김낙성 · 김용갑 · 김효석 · 노회찬 · 단병호 · 류근찬 · 박재완 · 박찬숙 · 배일도 · 변재일 · 신국환 · 신중식 · 심상정 · 엄호성 · 우윤근 · 이계진 · 이시종 · 이영순 · 이은영 · 이진구 · 이해봉 · 임종인 · 정문헌 · 정성호 · 정진석 · 천영세 · 최규성 · 최순영 · 한광원 · 한화갑 · 현애자 · 홍문표 의원 발의)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덕 의원 대표발의)

(2006. 7. 13 김영덕 · 신중식 · 김우남 · 류근찬 · 김재원 · 김광원 · 이상배 · 박순자 · 김명주 · 조일현 · 이강두 · 김낙성 의원 발의)

**農產物品質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5. 7. 19 최인기 · 우제창 · 심재엽 · 박재완 · 이원영 · 엄호성 · 이시종 · 이해봉 · 이목희 · 김재경 · 오제세 · 박상돈 · 채수찬 · 김양수 · 최규성 · 박승환 · 김종률 · 김정훈 · 김혁규 · 노영민 · 김명주 · 김재원 · 심재철 · 정성호 · 이근식 · 이재오 · 신중식 · 황우여 · 서재관 · 나경원 · 이상경 · 김성곤 · 안상수 · 정봉주 의원 발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중복 의원 대표발의)

(2005. 8. 30 정중복 · 권경석 · 김재원 · 정병



국·최인기·이윤성·우제항·이인기·김석준·이성권·고조홍·권오을·장향숙·윤건영·황우여·박찬숙·정성호·신상진·이원영·박세환·박재완·김재경·심재철·이상득·안상수·서재관·정화원·나경원·이해봉·신국환·김영춘 의원 발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7 이영호·신학용·안병엽·김선미·김우남·김명주·조일현·이정일·신중식·한광원·우윤근·우원식·김동철·이인영·강기정·김희선·강창일·양형일·김형오·김재윤·이상민·김기현·김영덕·한화갑 의원 발의)

(이상 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3건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

(2006. 3. 31 윤두환·이윤성·김학송·권오을·최병국·정갑윤·이병석·곽성문·이해봉·김태환·신국환·김영덕·이상배 의원 발의)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

(2006. 3. 31 서갑원·김교홍·김태년·김태홍·배기선·오영식·이광재·한병도·최철국·최규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6. 3. 22 신상진·주호영·임해규·김영덕·김충환·정희수·안홍준·유기준·정진섭·허천·김정권·김석준·서상기·이주호·권경석·진수희·박계동·이낙연·이해봉·엄호성·안상수·배일도·박재완·김재원·정두언·공성진·박세환·우원식·단병호·강기정·이재창·고조홍·김형주·최성·서재관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 의원 대표발의)

(2006. 5. 1 문희·박찬숙·안상수·정형근·

이해봉·박상돈·고진화·정두언·박재완·이계경·이경재 의원 발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 발의)

(2006. 6. 16 이경재·공성진·김영주·김형주·단병호·배일도·장복심·정두언·제종길·조정식 의원 발의)

**高齡者雇傭促進法 一部改正法律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5. 4. 8 안명옥·박찬숙·정화원·유기준·안홍준·한선교·정갑윤·김충환·유정복·김정훈·김석준 의원 발의)

**高齡者雇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 12 정부 제출)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6. 20 정부 제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 발의)

(2005. 12. 26 이호웅·문학진·박상돈·신학용·우원식·우제항·이기우·강혜숙·조경태·장영달·정봉주·한광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交通安全法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2004. 11. 19 이호웅·오제세·황우여·김태년·신중식·장경수·노영민·염동연·박재완·주승용·김교홍·윤호중·김원웅·이재오·엄호성·김동철·안명옥·이원영·김문수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2005. 11. 8 정부 제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2005. 12. 26 이호웅·문학진·박상돈·서혜석·신학용·우원식·우제항·이기우·강혜숙·조경태·장영달·정봉주·한광원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

(2006. 3. 20 심재엽 · 허천 · 류근찬 · 김재원 · 유기준 · 박재완 · 허태열 · 김광원 · 최규성 · 정문헌 · 정병국 · 엄호성 · 이해봉 · 임인배 · 서병수 · 신중식 · 이인기 · 박세환 · 이명규 · 윤두환 · 이정일 · 김석준 · 김춘진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6. 7. 5 정진석 · 이용희 · 홍재형 · 신국환 · 이낙연 · 홍문표 · 이인제 · 권선택 · 김낙성 · 김재운 · 류근찬 · 유기준 · 이성권 · 이진구 · 선병렬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6. 7. 6 박상돈 · 강혜숙 · 구논희 · 김동철 · 김종률 · 심재덕 · 양승조 · 오제세 · 이시종 · 정문헌 · 정성호 · 정장선 · 주승용 · 홍재형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6. 3. 27 박상돈 · 강혜숙 · 박재완 · 박찬숙 · 서재관 · 심재덕 · 안병엽 · 안상수 · 엄호성 · 이시종 · 이재오 · 최인기 · 황우여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

(2006. 4. 14 장경수 · 노영민 · 김동철 · 박상돈 · 임종인 · 조경태 · 제종길 · 서재관 · 장복심 · 주승용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

(2006. 8. 3 장경수 · 제종길 · 서혜석 · 정성호 · 서재관 · 장복심 · 임종인 · 서갑원 · 주승용 · 노영민 의원 발의)

**자동차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5. 6. 16 주승용 · 배기선 · 정봉주 · 최재성 · 염동연 · 양형일 · 박재완 · 이해봉 · 엄호성 · 김태홍 · 우제창 · 황우여 · 우윤근 · 안상수 · 이상경 · 김영춘 · 한병도 의원 발의)

**자동차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5. 30 정부 제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2005. 11. 8 임인배 · 고조홍 · 공성진 · 권경석 · 권오을 · 김석준 · 김성조 · 김재원 · 김충환 · 김태환 · 김희정 · 신상진 · 심재철 · 안상수 · 엄호성 · 이계경 · 이명규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황우여 의원 발의)

**航空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2006. 1. 4 김태환 · 고진화 · 김광원 · 김성조 · 김재경 · 김재원 · 신국환 · 신상진 · 신학용 · 심재철 · 윤두환 · 이명규 · 이상배 · 이인기 · 이해봉 · 이해훈 · 임인배 · 임해규 · 정갑윤 · 조경태 · 최병국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6. 2. 17 이성권 · 이계경 · 김병호 · 김석준 · 김재경 · 서상기 · 박형준 · 권철현 · 김양수 · 김희정 · 김명주 · 정진석 의원 발의)

**測量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9. 22 정부 제출)

**測量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6. 8. 9 박상돈 · 김종률 · 김태년 · 노영민 · 박명광 · 신학용 · 심재덕 · 양승조 · 오제세 · 정문헌 · 정장선 · 홍재형 의원 발의)

(이상 1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9건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모 · 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5. 12. 12 김영선 · 박세환 · 심재철 · 이인기 · 박상돈 · 이재오 · 이원영 · 엄호성 · 황우여 · 문석호 · 안병엽 · 진수희 · 이시종 · 허태열 · 변재일 의원 발의)

**모 · 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

(2006. 1. 26 이계안 · 박기춘 · 염동연 · 우원식 · 노웅래 · 노현송 · 최재성 · 배기선 · 이광철 · 홍미영 · 김효석 · 강기정 · 백원우 · 강혜숙 · 신학용 · 이영호 · 이경숙 · 서재관 · 손봉숙 · 조배숙 · 심재덕 · 채수찬 · 김현미 · 이목희 · 김애실 · 이재오 · 이시종 · 이인영 · 강길부 · 이상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만복) 인사청문요청안**

(2006. 11. 7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정보위원장 보고

11월 23일 대통령에게 송부

○의안 철회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전효숙) 임명동의(인사청문)안**

(2006. 9. 7 대통령 제출)

11월 29일 제출자 철회 요구, 12월 1일 철회됨

○서면답변서 제출

**「증권거래법」 개정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6. 11. 29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